##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의 반동성

림 금 성

자본주의국가에서 검찰은 정권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의 독재의 수단으로서 부르죠아 정치실현에 복무한다. 부르죠아검찰의 사명은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와 뗴여놓고 생각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사회에서 국가기관에 앉아있는 관료배들은 그자체의 본성으로부터 대중과 동떨어져있습니다.》(《김일성전집》제16권 399폐지)

제국주의반동들은 검찰의 계급적본질을 숨기기 위해 마치도 검찰이 사회공공의 리익, 인민들의 리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 에서 검사는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그들을 기만하고 부르죠아법앞에 순종시켜 자본가계급에 게 복무하는 반동관료배이다.

검찰이 사회공동의 리익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권한을 행사하자면 그것을 맡아 실현하는 담당자들이 인민의 대변자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그래 야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검찰기관은 인민우에 군림한 독재기관으로서 그 구성자체가 자본가계급의 대변자들로 이루어져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가 검찰기관을 독점자본가계급의 대변자들로 꾸릴수 있게 설정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검사의 임명조건이 광 범한 인민대중은 검사로 될수 없도록 규정한데 있다.

검사의 임명조건은 근로인민대중을 검찰사업에 인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검사들이 근로인민대중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여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검찰제도에서는 검사의 임명조건을 부르죠아지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도록 설정해놓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배제함으로써 검찰기관이 인민대중을 억 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 검사로는 《최고의 법률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정한 사법실천경험이 있는 《좋은 품성》과 높은 《도덕적수양》을 소유한 《사람》만이 될수 있다고 하고있다.

검사의 임명조건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최고의 법률전문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은 결국 부르죠아지들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전문법률교육을 받은자들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막대한 자금을 내야 하는 대학공부를 한다는것은 상상조차할수 없는 한갖 꿈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실천경험도 일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등용되여 일한적이 있어야 한 다는것으로서 이것 역시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된다.

미국의 대다수 주들에서는 검사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사람을 보통 그 주의 법률가협회의 성원들로 보고있다. 그리고 일부 주들에서는 이와 같은 신분조건외에 일

정한 년한의 실천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돈없고 권세없는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갖출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인것이다. 교육을 통해 가질수 있는 일정한 법률지식과사법기관에 들어가는것자체도 돈이나 권세가 있어야 실현될수 있다. 실천적으로 미국에서검사는 보통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이여야 하며 그것도 해당 지역 정치세력의 지지를받아야만 임명될수 있다. 결국 국가정권을 장악한 대독점자본가계급이 부여하고 인정해주는 변호사자격과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조건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검사의 임명에서 배제하고 자본가계급에게 충실한 돈있고 권세있는자들만을 위한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검사임명제도는 대학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전문법률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배제하고 돈많고 권세있는자들만이 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고있는데 그 반동성이 있다.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검사의 임명절차와 방법이 검찰기관을 자본가계급의 대변자들로 꾸릴수 있게 규정한데 있다.

검사의 임명절차와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것은 검사들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가를 규정하게 한다. 모든 임명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여 검사로 임명될수 있는것 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검찰기관이 행정부에 종속되여있다.

미국에서 사법성은 련방정부의 행정계통에 소속되여있으며 그 책임자인 사법장관은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고 성문화하여 규정하였다. 사법장관(검찰총장)과 련방대리검 찰총장, 련방부검찰총장 등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있다.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검찰총장은 련방검찰소 검사의 자격시험과 임명사업을 맡아 하며 주검찰소의 검찰장은 주행정부에서 임명하도록 되여있다.

검찰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여있고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과 주행정부에 의하여 검찰소성원들이 임명되도록 절차와 방법이 규정된것은 그들이 철두철미 행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실현을 법적으로 뒤받침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련방과 주검찰소성원들은 자기들을 검사로 임명한 대통령과 대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무기로 하여 반동적인 부르죠아정책을 반대해나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혹심하게 벌어지고있는 경찰당국의 인종차별적인 범죄행위들을 검찰이 비호두둔하고 눈감아주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최근년간에만도 미국의 루이지아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련이어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행위들이 감행되였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에게 다짜고짜달려들어 그의 가슴과 등에 여러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히 학살하였고 미네소타주에서도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한 흑인청년을 아무런 리유없이 짐승처럼 쏘아죽이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여 만사람의 격분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그러나 공공리익의 대표자로서공민의 인신, 자유, 명예 등 권리를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검찰은 이 사건들을 수수방관하고있으며 심지어 이에 분노하여 시위를 벌리는 광범한 군중을 탄압하는 경찰의 폭거를 묵인조장하고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미국의 검찰이 반동적인 정부의 정책실현의 도구, 충실한 방조자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검사의 해임조건이 검사들을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규정한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에 저촉되는 검사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기관의 존재와 검사의 활동이 자본가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검사의 해임을 법률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있다. 부르죠아형사 소송의 어용학자들은 그것이 마치도 검사의 직무의 안정성과 련속적인 직무집행에 유리 하며 나아가서 검찰권의 통일적실현을 보장하자는데 있다고 설교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라는것이 현실에서 뚜렷이 실증 되고있다.

미국의 해당 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함께 해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검사로 일하는 기간에 법적조건이 없이 그를 해임시킬수 없다. 즉 검사가 직무상《과오》를 범하였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무집행능력을 잃었다는 구체적사실이 있을 경우와 기타 원인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임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검사의 해임조건에서의 검사의 직무상《과오》와 《부당한 행위》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검사들이 대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도록 자극을 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직무상《과오》나 《부당한 행위》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여있는 자본주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대독점자본가계급에게는 용납될수도, 허용될수도 없는것으로 하여 검사의 해임조건으로 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검사를 해임할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한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검사들을 제때에 해임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것으로서 검사들이 자 본가계급에게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검사의 해임조건이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규정된것과 함께 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 법적처벌을 법률적으로 제한함으로 써 검사들의 전횡과 독단을 허용해주고있다.

그 어느 사회에서나 국가의 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준 칙, 행동규범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가 누구든 해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당자로서 그가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검찰권실현의 정도와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 므로 모든 나라들에서는 검사를 선출하여 임명할 때 엄격한 조건규정이 있는것외에 검사 의 임직기간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규정을 위반한 검사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 여 검찰권의 정확하고 통일적인 실현을 보장한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제재도 반드시 일 정한 리유밑에 해당한 절차에 따라야만 합법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위반한 검사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공무원법에서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무능력이나 부정부패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능력은 실력부족으로 오는 무능력, 지식의 빈곤 또는 방향, 방법의 착각으로 오는 무능력을 말하며 부정부패행위는 고의적인 잘못으로 오는 행동이나 실수, 법, 규률 또는 규칙의 람용, 온당치 못한 행동,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거부를 의미하며 이 경우들을 제외하고 검사는 법적처벌

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무능력은 결국 실력부족이나 지식의 빈곤, 범죄와의 투쟁방향과 방법을 잘못 설정하여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보호할수 없게 한것으로써 이 경우 법적처벌의 대상으로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행위는 부르죠아지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되여있는 법을 람용하고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 경우에도 법적처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결국 검사에 대한 법적처벌은 대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에 침해를 주는 경우에 적용 된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검사들은 온갖 전횡과 독단을 일삼으면서 대 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해나서게 된다.

오늘 미국에서는 대독점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선출된 검사들의 전횡과 독단으로 하여 광범한 군중이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죄아닌 죄로 감옥생활을 강요 당하고있으며 검찰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규탄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검사의 임명 및 해임제도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민주주의》 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